



제42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상자산사업자 임원 결격사유 신설 등 〉
■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57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훈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16.
3. 회 부 일 : 2025. 4.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조치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에게 대하여 해임권고, 문책요구 등을 할 수 있음.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및 임원(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등을 통보하였음. 그러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문책요구 등이 권고에 그칠 뿐이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라도 대표이사 연임에 아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같은 법이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사업자도 동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의무를 위반하여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

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은 즉시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에 준하는 역할과 영향력을 가지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그에 부합하는 책임과 제한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이 법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은 임원의 직을 잃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이 못한다. ⑤ 제2항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임원의 직(職)을 잃는다.
<u><신설></u>	

□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¹⁾는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제7호에서는 금융관계법령²⁾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시행령 제5조)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3. 공인회계사법	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6. 국민연금법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9.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1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4. 금융지주회사법
1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1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1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9. 기술보증기금법	20.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22. 농업협동조합법
23. 담보부사채신탁법	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8. 보험업법

퇴직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³⁾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시행령 제5조)	
2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0. 부동산투자회사법
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2. 산업발전법
33. 상호저축은행법	34. 새마을금고법
3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36. 선박투자회사법
3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38. 수산업협동조합법
39. 신용보증기금법	4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1. 신용협동조합법	42. 여신전문금융업법
43. 예금자보호법	4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5. 외국인투자 촉진법	46. 외국환거래법
4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48. 은행법
49. 이종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5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53. 전자금융거래법	5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5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6. 주택법
57. 중소기업은행법	58. 채권의 공정한 주심에 관한 법률
5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60. 한국산업은행법
61. 한국수출입은행법	62. 한국은행법
6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64. 한국투자공사법
65.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등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 또한, 같은 조 제2항4)은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시행령 제4조5)는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임원) 또는 정직요구(직원)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여 예외로 두고 있음.

□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미비하여 금융회사의 임원과 달리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임원이 될 수 있고, 임원이 제재조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은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에게도 금융회사 임원과 유사한 결격사유를 두려는 취지임.

-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의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임원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보호,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 건전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임원 결격요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후 일정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금융회사 임원 결격요건인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후 일정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그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입법취지⁶⁾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에게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두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취지

6)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같은 법이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사업자도 동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또는 「특정 금융정보법」 외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규제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과 개정안을 통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정하려는 임원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법률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3항7)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임원이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임원 결격사유를 「특정금융정보법」이 아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도 상이하게 정하고 있어 규제 대상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표] 개정안과 「특정금융정보법」 상 결격요건 비교

개정안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특정금융정보법」 상 임원 결격사유
○ 이 법 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하여 임원결격사유를 규율하는 체계 * 금융관련 법률: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 - 대통령령: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각 호 (제32호·제35호 및 제43호 제외)에 따른 법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추가로 규정

- 따라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이 법에 포함하고,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 수리요건을 “임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적합할 것”으로 수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법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⁸⁾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이 법, 「특정금융정보법」 외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8) 참고로, 금융회사 임원의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각 업권법에서 인허가 요건으로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11